

신고 번호	☐ 작업시간조정명령 ☐ 소음·진동발생행위 분산명령 ☐ 소음·진동발생행위 중지명령 ☐ 방음·방진시설 설치명령 ☐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명령 등			이행 보고서	처리 기간
제 호	생활소음·진동 규제기준 초과시설				4일 (검사 기간 제외)
보고인	①상호(사업장명칭)				
	②성명(대표자)		③생년월일		
	④주 소		(전화번호:)		
⑤공사장소재지			(전화번호:)		
⑥공사명칭					
⑦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 · 기구의 명칭 및 형식					
조치명령 이행사항	⑧이행기간				
	⑨이행내역				
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☐작업시간조정명령, ☐소음·진동발생 행위 분산명령, ☐방음·방진시설 설치명령, ☐저소음 건설기계 사용명령, ☐소음·진동발생행위 중지명령을 이행하였기에 보고합니다. 년 월 일 보고인 (서명 또는 인)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					
구비서류: 없음					수수료
					없음

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(뒤 쪽)

